
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통상활용지원사업 정의 (안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·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8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대외무역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의 또는 약칭되지 않는 “통상 활용지원사업”의 정의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 방지 및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·협약 절차 보완 (안 제6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국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출·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「대외무역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8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특별조치 사유를 반영하고, 특별조치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
-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조사 방법·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하위규정(고시)으로 정하도록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절차 명확화, 구체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 범위 (안 제12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8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대외무역법」 제8조의3제2항*의 위임사항인 관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
- * (대외무역법 제8조의3제2항) 관세청에 「FTA관세법」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(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,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) 제공 요청 가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통계자료 제공 및 활용 관련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 절차 등 규정 (안 제12조의5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8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대외무역법」 제8조의3제3항*의 위임사항인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
- * (대외무역법 제8조의3제3항) 조직·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(법인)을 통상조약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기관(통상활용지원기관)으로 지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통상활용지원기관의 객관성·투명성·전문성 제고 및 기존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(안 제12조의6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8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대외무역법」 제8조의3제5항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사유*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
 - * (대외무역법 제8조의3제5항)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, ②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③현저히 부당한 업무수행
 - 6개월 이상 지정기준 미충족, 6개월 이상 지원업무 미수행, 보조금법 위반, 취득정보의 목적 외 사용·유출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통상활용지원기관 관리의 적정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6. 기타 위임사항 규정 (안 제12조의7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대외무역법」이 개정(2026. 4. 21. 법률 제21568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대외무역법」 제8조의3제6항*에 따라 통상활용 등의 지원사업, 통상활용 지원기관의 지정·운영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* (대외무역법 제8조의3제6항) 통상활용 등의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으로 정함](#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통상활용 등의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·운영의 탄력성·효율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